

< 7월 주요 상담사례 >

- (미술)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 작가이다. 얼마 전 A 회사와 외주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일러스트를 제공하였다. 계약 내용에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A 회사에서 일러스트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A 회사의 주장대로 작가가 제공한 일러스트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라고 하는 ‘창작자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및 제10조 참조).
 - ‘창작자 원칙’의 예외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라는 개념이 있다.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 위 사안에서는 프리랜서 작가가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등과 프리랜서 작가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단체명의저작물¹⁾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여 도급관계에서 주문자가 아닌 제작자가 저작자라고 판단하였다.²⁾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프리랜서 작가의 경우 도급관계와 유사하게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재량에 의해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프리랜서 작가의 작품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작가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1)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6. 29. 시행된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는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단체명의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업무상저작물’로 바꾸었다.

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 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 시스템(챗봇)에 가장 많이 묻는 질의 >

순위	질의
1	저작권 등록 문의
2	저작권법 상담사례
3	등록 절차
4	신규 권리등록
5	저작권(이용 일반 및 제한)
6	등록 일반
7	저작권(일반저작물) 등록 신청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8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저작권 (Copyright)
10	저작권교육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챗봇: <https://chatbot.gov.kt-aicc.com/client/GCL-01-C-00000221-0001/chat.html>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서울시, 서울한강체L' 글꼴로 작성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5년 7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